

영등포구의회
제187회 임시회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5. 4. 2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59호로 2015년 4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5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을 영등포구의회 의결 후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양평2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현 양평2동 주민센터는 1975년 준공되어 40년된 건물로 노후 되고 협소(551.13㎡)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양 평2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양평2동 주민센터를 공공복합시설(주 차장, 주민센터, 구립어린이집)로 건립하고자 함.

4.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 재산

○ 양평2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지하3층 지상4층)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득시기	비 고
지목	소 재 지	토지면적	건물면적			
주차장	양평동4가 96	1,804.6㎡	5,746.9㎡	13,920,059	2014.7.28~ 2018.3.31	부지 기 확보 (소유자:영등포구)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양평2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민센터, 주차장, 구립 어린이집 등 공공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 그 동안의 추진 경과를 살펴 보면,

2008. 4월 현 청사부지(서울시 소유)와 인접 사유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청사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사유지 매입이 쉽지 않고 양평2동 공영주차장으로 장소를 이전하여 청사 건립을 원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어,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청원, 건립 타당성 용역 등 일련의 주민 참여 과정을 거쳐 2015.3.26 주차장과 공공청사를 함께 건립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 고시됨으로써 양평동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주민센터는 물론 어린이집, 주차장 등 주민복지 복합시설 건립이 가능하게 된 것임.

○ 소요예산을 분석해 보면

- 총 139억 2,006만원 중 시비는 6억 8,720만원, 구비는 132억 3,286만원이며, 구비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41억 7,088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90억 6,198만원임.
- 시비 6억 8,720만원은 복합시설 내 구립 어린이집 건립비를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며,
-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금년에 설계비로 3억 5,300만원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집행되며,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매년 40억원 이상이 소요될 예정임.

-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표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또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도서관, 체력단련실, 작은도서관, 녹지 등 주민을 위한 시설 배치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동 주민센터를 마을복지센터로 전환하고 있는 현 추세에도 부합되는 정책이라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7.7.]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